

온라인 매체 불법 의료광고 관련 회원 주의 안내

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

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.

최근 여름 방학 및 휴가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환자 유인·알선 및 거짓·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 확인되었으며, 또한 지속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이신 경우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온라인 매체 중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의 경우에도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벌칙조항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, 기 광고된 내용을 점검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 및 시정하고 올바른 광고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관련법령 (의료광고 관련)

의료법 제27조(환자 유인·알선)

③ 누구든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나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,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·알선·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위반 시 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의료법 제88조 제1호)
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([별표]행정처분기준)

의료법 제56조(의료광고의 금지 등)

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.

- 3.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
- 8.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
 - 위반 시 :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(의료법 제89조 제1호)
의료기관 업무정지 1~2개월([별표]행정처분기준)

의료법 제57조(의료광고의 심의)

-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 - 1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신문·인터넷신문 또는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
 - 2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(懸垂幕), 벽보, 전단(傳單) 및 교통시설·교통수단에 표시(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·음성·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)되는 것
- 3. 전광판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[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포함한다]
- 5. 그 밖에 매체의 성질,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

□ 첨부 : [보건복지부 보도자료]불법의료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관련 1부. 끝.